

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 압류 통지
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0조 제2항(건설기술인교육 훈련 미이수) 위반사실이 통보되어 같은법 제91제3항, 시행령 제121조[별표11]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된 사항에 대하여 「지방세 징수법」 제51조 및 「지방행정재제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압류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8. 8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- 공고기간 : 2024. 8. 8. ~ 2024. 8. 23.
-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- 공고내용

체 납 자	성 명	이*설
	주 소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***, ***동 ****호(가정동)
압류재산의 표 시	**노****(압류일자: 2024.07.09.)	